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11.28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11.1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11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08.11.28)  
상정, 심사, 수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 위촉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,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·신고,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·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함(안 제2조).

2) 복지위원회는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3) 복지위원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.

가)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
나)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다)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
라)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

마)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동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2008.2.29 법률제8852호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2008.11.5 보건복지가족부령제73호) 제2조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,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·동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하되,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마포구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0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, 안 제1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은 조문에 동일 법률이 인용되므로 약칭을 사용하여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운영”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3항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

규정되어 있어 이를 “정수 및 운영” 으로 각각 수정을 요함.

안 제5조제1호 중 “모자가정” 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이를 “한부모가족” 으로,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” 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“법 제2조제1호” 로, 동조 제4호 위원의 직무 중 “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” 사항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“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” 로, 안 제9조 중 “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” 는 “수당” 으로 각각 용어 정리가 필요함.

복지위원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거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바, 증표 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